

16. 職業訓練費用基準中 改正

勞勤部 告示 第1996-47號 1996. 12. 23

직업훈련기본법 제25조 제3항,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비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직업훈련비용기준(노동부 고시 제1995-51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그 내용연수”를 “그 내용년수”로 하고, “(양성 또는 전직훈련비율이 50% 이상)”을 “(양성 또는 전직훈련비율이 연인원 기준으로 30% 이상이어야 한다) 및 장비”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등재”를 “등재(훈련시설이 2개 년도 이상에 걸쳐 건립될 경우 착공년도에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는 완공후 등재할 것을 조건으로 인정한다)”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 중 “양성 또는 전직훈련(이하 “양성훈련”이라 한다)시설”을 “양성 또는 전직훈련시설”로 하며, “경우 양성훈련 연인원이 50% 이상인 때)”를 “경우에는 양성 또는 전직훈련비율이 연인원 기준으로 30% 이상인 시설”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

중 “양성훈련시설”을 “양성 또는 전직훈련시설”로 한다.

제8조 제2항 제2호 중 “◦교재비”를 “가. 교재비”로 하고, “◦실습재료비”를 “나. 실습재료비”로 하며, 동조 동항 제3호 중 “◦감가상각비: 훈련시설 및 장비의 감가상각비”를 “가. 감가상각비: 훈련시설 및 장비의 감가상각비(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임차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관리유지비”를 “나. 관리유지비”로 하며, “◦동력비”를 “다. 동력비”로 하며, 동조 동항 제4호 중 “◦운영비”를 “가. 운영비”로 하고, “◦재해보험료”를 “나. 재해보험료”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양성훈련과정”을 “양성 및 전직훈련과정”으로 하고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40범위내의 금액”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범위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중 “양성훈련과정”을 “양성 또는 전직훈련과정”으로 하고, 동

조 동항 제1호 중 “지급된 평균임금의”을 “훈련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의”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양성훈련(전직훈련 제외)”를 “양성훈련”으로 하고, “1일 2,320원”을 “1일 2,440원”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1인 6월 800시간)”을 “(1인 6월 700시간 기준)”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직훈련과정의 표준훈련비는 제1항의 표준훈련에 의하고 향상 및 재훈련과정의 표준훈련비는 제1항의 표준훈련비중 재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훈련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훈련직종에 대하여는 시설장비 항목의 경우 표준훈련비의 2분의 1을 인정한다.

제1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현장훈련의 표준훈련비는 별표5와 같다.

제14조 제3항 중 “양성훈련과정”을 “양성 또는 전직훈련과정”으로 한다.

제15조 중 “당해년도 직업훈련 의무비용의 100분의 40까지 직업훈련비용으로 인정한다”를 “직업훈련관련사업의 비용은 당해년도 직업훈련의무비용의 100분의 40까지 인정한다. 이 경우 다른 직업훈련실시자에 대한 지원의의 직업훈련관련사업은 별표 1의 비용사용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17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기준의 장비구입비를 직업훈련관련사업비용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노동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정산원칙) 사업주가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업훈련비용의 정산에 있어서 훈련수당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인정하고 그외의 항목에 대한 비용인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 훈련비용중 직업훈련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총한도액은 훈련수료인원에 각 과정별, 방법별 표준훈련비를 승하여 산출한다.

(훈련수료인원×해당 표준훈련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 훈련비용을 직업훈련비용으로 인정함에 있어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항목별 비용의 인정한도액은 훈련수료인원에 해당항목별 비용을 승하여 50%를 가산(훈련수료인원×해당항목별비용×150/100)하여 산출하되, 총표준훈련비(해당항목이 없는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인정범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비용인정은 실 집행액과 항목별 비용인정 한도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인정한다.

4. 훈련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의 비용인정은 해당 표준훈련비에 훈련수료인원을 승하여 700시간으로 제하고 실 훈련시간 및 보정값을 승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보정값을 승하여 산출함으로써 훈련기간 1월 미만의 훈련비용이 훈련기간 1월의 훈련비용을 초과할 때에는 훈련기간 1월의 훈련비용을, 훈련기간 3월 미만의 훈련비용이 훈련기간 3월의 훈련비용을 초과할 때는 훈련기간 3월의 훈련비용을 인정한다.

$[(\text{표준훈련비} \times \text{훈련수료인원} \div 700 \text{시간}) \times \text{실훈련시간}] \times \text{보정값}$

보정값 : 1월 미만 1.5, 3월 미만 1.2

5. 훈련수료인원을 산출함에 있어 전 훈련기간의 8할(야간과정은 7할) 이상을 이수한 자는 수료인원으로 간주한다. 전 훈련기간의 8할(야간과정은 7할) 미만을 이수하고 중도 탈락한 경우는 월단위(월 미만 불인정)로 계산하여 인정한다.

6. 훈련기간의 5할 이상을 이수하고 중

도탈락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7. 직업훈련시설이 독립시설인 경우(독립된 시설이라 함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사업장 이외 지역에 설치된 시설 또는 사업장내라 할지라도 생산시설 등과 구분되는 별도의 장소에 단독건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에는 표준훈련비 항목별로 실 사용비용을 근거로 정산하고, 독립시설이 아닌 복합시설의 경우에는 표준훈련비 항목별로 정산하되 훈련자료비중 실습재료비, 시설장비비의 항목은 훈련수료인원에 해당 표준훈련비를 승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사업별 주요훈련직종예시표에 별지와 같이 훈련직종을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업훈련 과정별 비용 사용한도

부 문 별		사 용 한 도
직 업 훈 련	①양성훈련 전직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체훈련 : 제한없음(당해년도 비용초과 집행시 이월 가능) ◦ 현장훈련 : 제한없음(당해년도 비용초과 집행시 이월 불가능)
	②향상훈련 재훈 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년도 직업훈련의무비용의 100분의 80 이내 ※단, 직무능력 향상훈련은 이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③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직업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②부분별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100분의 10이내(양성, 전직훈련은 직업훈련 의무비용의 10% 이내, 향상, 재훈련은 8% 이내에서 사용) 다만, 공공훈련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무비용의 100분의 20 이내(양성, 전직훈련은 직업훈련 의무비용의 100분의 20 이내, 향상, 재훈련은 100분의 16 이내에서 사용가능)
직업훈련관련사업		◦ 당해년도 직업훈련 의무비용의 100분의 30 이내

[별표 2]

'97년 양성훈련과정 집체훈련 표준훈련비

(6개월 700시간 기준 1인당)

(단위 : 천원)

사업분류 (업종명)	항목	계	인건비	훈련자료비			시설장비비				일반운영비			기속 사비
				계	실습 재료비	교재비	계	감가 상각비	관리 유지비	동력비	계	운영비	재해 보험료	
평	균	2,545	1,081	188	164	24	248	169	40	39	314	248	66	714
10.	석탄관업	2,670	1,081	193	176	17	343	271	42	30	339	273	66	714
13.	금속광업	2,540	1,081	138	114	24	293	204	48	41	314	248	66	714
15.	음식료품 제조업	2,489	1,081	212	192	20	176	120	29	27	306	240	66	714

사업분류 (업종명)	항목	계	인건비	훈련자료비			시설장비비				일반운영비			기속 사비
				계	실습 재료비	교재비	계	감가 상각비	관리 유지비	동력비	계	운영비	재해 보험료	
17. 섬유제품 제조업		2,252	1,081	202	177	25	247	152	36	59	318	252	66	714
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294	1,081	108	82	26	120	83	21	16	271	205	66	714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제조업		2,502	1,081	234	212	22	165	106	27	32	308	242	66	714
20.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2,545	1,081	188	164	24	248	169	40	39	314	248	66	714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395	1,081	126	102	24	184	117	33	34	290	224	66	714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462	1,081	99	74	25	266	186	47	33	302	236	66	714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663	1,081	151	127	24	380	238	62	80	337	271	66	714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579	1,081	160	139	21	302	190	45	67	322	256	66	714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02	1,081	204	184	20	194	114	25	55	309	243	66	714
26.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2,489	1,081	164	140	24	224	164	40	20	306	240	66	714
27. 제1차 금속산업		2,350	1,081	120	100	20	153	98	20	35	282	216	66	714
28.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외)		2,685	1,081	303	278	25	249	156	36	57	338	272	66	714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464	1,081	228	195	33	1,032	709	216	107	409	343	66	714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2,416	1,081	217	193	24	109	76	14	19	295	229	66	714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449	1,081	185	160	25	170	129	25	16	299	233	66	714

사업분류 (업종명)	항목	계	인건비	훈련자료비			시설장비비			일반운영비			기속 사비	
				계	실습 재료비	교재비	계	감가 상각비	관리 유지비	동력비	계	운영비		재해 보험료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 비 제조업		2,448	1,081	218	196	22	136	101	20	15	299	233	66	714
33. 의료, 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310	1,081	182	158	24	59	42	6	11	274	208	66	714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 조업		2,751	1,081	217	189	28	389	284	54	51	350	284	66	714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51	1,081	650	629	21	375	229	51	95	431	365	66	714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2,457	1,081	163	139	24	200	143	33	24	299	233	66	714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2,463	1,081	167	143	24	200	143	33	24	301	235	66	714
45.-46. 건설업		2,471	1,081	180	158	22	293	145	32	16	303	237	66	714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 인 운송업		2,455	1,081	172	143	29	177	101	39	37	311	245	66	714
62. 항공운송업		2,780	1,081	168	139	29	464	310	68	86	353	287	66	714
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2,378	1,081	107	83	24	188	131	37	20	288	222	66	714
64. 통신업		2,311	1,081	131	106	25	110	83	14	13	275	209	66	714
93. 기타 서비스업		2,421	1,081	110	84	26	221	164	33	24	295	229	66	714
*. 사무서비스직		2,342	1,081	141	111	30	128	89	19	20	278	212	66	714

[별표 3]

사업별 주요훈련직종 예시표

산업분류(업종별)	주요 훈련직종(신설직종)
13. 금속광업	화약취급
15. 음식료품 제조업	육가공, 수산식품가공, 수산양식
17. 섬유제품 제조업	정련표백
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모자봉제

산업분류(업종별)	주요 훈련직종(신설직종)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임산가공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전자출판, 그라비아인쇄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반응기기, 화장품제조, 의약품제조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FRP제품제조
26.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분쇄혼합
27. 제1차 금속산업	아연제련, 인발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연강판피복아크용접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성형기계정비, 생산가공, 방전가공, NC기계, CNC 선반, 머시닝센터, 공장자동화, 보링그라우팅, 자동판매기수리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장치 제조업	PLC, 전력전자, 모터펄프조립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반도체가공, 컴퓨터디스크가공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선박기관외장, 선박기관정비, 선박도장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가구디자인, 인장공예, 광고도장
40. 전기·가스 및 증기업	보일러시공
45.-46. 건설업	건축시공, 건설공정관리, 건설품질검사, 전산응용건축제도, 운수운돌, 금속재창호제작, 석공, 빌딩관리, 조경, 철도궤도, 빌딩자동제어, 수배전반조립
60. 육상운송, 파이프라인운송업	전동차정비, 열차조작, 신호보안, 지하철전기, 지하철역무
62. 항공운송업	항공기기체조립
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컨테이너크레인운전
64. 통신업	유선방송설비, 이동통신설비, 정보통신운용, 통신기기수리, 통신사, 레이더관측
93. 기타 서비스업	개인용컴퓨터수리
* 사무서비스직	발명품개발, 판매서비스, 경리사무, 구매관리, 기술판매, 무역사무, 워드프로세서, 피부미용, 한식, 중식, 일식, 북어요리, 국내관광통역안내원, 국외관광통역안내원, 관광상품개발, 지배인교육

[별표 4]

'97년 관리·감독자 훈련과정 표준훈련비

(15명 40시간 기준1인당)

(단위: 원)

계	인건비	훈련자료비	시설관리유지비	일반운영비	기숙사비
296,000	153,000	19,000	8,000	25,000	91,000

[별표 5]

현장훈련의 표준훈련비

항 목	표 준 훈 련 비
1. 인건비	집체훈련 표준훈련비의 100분의 50
2. 훈련자료비	
가. 교재비	집체훈련 표준훈련비 전액
나. 실습교재비	인정하지 않음
3. 시설장비비	인정하지 않음
4. 일반운영비	
가. 운영비	집체훈련 표준훈련비의 100분의 50
나. 재해보험료	집체훈련 표준훈련비 전액(양성훈련과정만 해당)
5. 기숙사비	집체훈련 표준훈련비의 100분의 50(양성·전직훈련 과정만 해당)
6. 훈련수당	제9조 제2항의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직업훈련기준의 장비구입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사 업 체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 종		
훈 련 기 관	훈 련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직업훈련기준의 장비구입 승인 신청내역							
훈 련 내 역				기 준 외 장 비			
직 종	기간(개월)	학급당인원	학 급 수	장 비 명	단 위	수 량	
<p>직업훈련비용기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업훈련기준의 장비구입을 승인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노동청 (사무소)장 귀하</p>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없음		

323-09011민
'96. 11. 12. 승인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2호 서식]

직업훈련기준의 장비구입 [승인] 통지서
 불승인

사 업 체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 종	
훈 련 기 관	훈 련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승 인 사 항

훈 련 내 역				기 준 외 장 비		
직 종	기 간 (개 월)	학 급 당 인 원	학 급 수	장 비 명	단 위	수 량

불 승인 사유

직업훈련비용기준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기준의 장비구입을
 위와 같이 승인 통지합니다.
 불승인

년 월 일

지방노동청 (사무소)장 (인)

323-09111일
 '96. 11. 12. 승인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 (재활용품)

주택회보